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제9-3차)

2020. 12. 29.



h·well
국민건강보험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참고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 9-2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대응 지침 9-1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 9-4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대응 지침 9-2판 • 생활속거리두기 4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제3판
내용 변경	코로나19 개요	
	• (개정) 역학적 특성	• 역학적 특성 - 무증상 감염 :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전파가능
	• (개정) 진단 및 치료 - 세계 치명률 : 약 3.69%(WHO, 8.10기준) - 우리나라 치명률: 2.09%(8.10. 0시기준)	• 진단 및 치료 - 세계 치명률 : 2.33%(WHO, 12.4. 0시기준) - 우리나라 치명률: 1.48%(12.4. 0시기준)
	• (개정) 조사대상 유증상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개정)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 ④ 응급선별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 ④ 응급선별검사결과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행동지침	
	• (신규) 전 직원 공통 행동지침	• 전 직원 공통 행동지침 - 사무실 근무할 때, 식사 할 때, 출퇴근 할 때
	• (개정) 환기·소독 및 손 씻기 생활화	• 가림막·소독·환기·냉난방기 사용 등
	• (개정)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직원 행동지침	•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직원 행동지침 - 센터 이용자 안내, 이용객 분류, 상담실 등 조치사항
	• (개정) 코로나19 직원 복무관리 기준	• 코로나19 직원 복무관리 기준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퇴근 중·수간 자녀돌봄 등의 근태관리 - 가족돌봄휴가(무급)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2023.1.까지 유효) 4.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재택근무 유형
	• (개정) 방역관리자 및 연락담당자 행동지침	• 방역관리자 및 연락담당자 행동지침 - 필요시 방문자 출입자명부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
	붙임	
	• (개정)	•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 1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 12.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수칙 • 13.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

목 차

[코로나19 개요]	1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행동지침]	4
I. 지사장 행동지침	4
II. 전 직원 행동지침	5
III. 민원실 직원 행동지침	8
1. 민원실 민원안내자 행동지침	9
2. 일반민원실 상담직원 행동지침	13
3. 선별민원실 상담직원 행동지침	13
IV. 면회실 상담직원 행동지침	16
V. 출장 직원 행동지침	19
VI.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직원 행동지침	21
VII. 행사(회의, 교육, 워크숍 등) 운영직원 행동지침	26
VIII. 코로나19 직원 복무관리 기준	31
IX. 방역관리자 및 연락담당자 행동지침	37
<붙임>	39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40
2. 민원접수증 서식	41
3. 코로나19 상황 발생 보고 서식	42
4.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	43
5. 민원안내자운영 및 마스크 착용 안내문 시안	44
6. 민원실 구분운영 및 보건소 상담 안내문(배너) 시안	45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46
8.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47
9.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48
10.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5대 핵심수칙)	50
1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52
12.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수칙	54
13. 전자출입명부 시스템(KI-Pass)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	56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 (임상증상)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환자의 약 80%는 경증, 14%는 중증, 5%는 치명적임
 -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기저질환 유무와 관련이 있음
-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일 (평균 5~7일)
- (감염재생산지수*)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재생산지수는 2.2에서 3.3으로 추정
 - 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에는 재생산지수는 실제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 *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
- (전파경로)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기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 ** 에어로졸 기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 ***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검출
- (무증상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입원시 26.7%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 (참고문헌)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 진단 및 치료

- (진단)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 선별진료소에서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하기도(가래) 검체 채취하여 진행
- (치료)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
 - ※ 세계 치명률은 약 2.33%(WHO, 12.4. 0시 기준), 우리나라 치명률은 1.48%(12.4. 0시 기준)

《 코로나19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

1 사례 정의

-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C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2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조사대상 유증상자①로 신고)

-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④ **응급선별검사결과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3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 2호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접촉자)
 -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접촉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가능)
- ②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간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4 접촉자 범위 예시 ... WHO 5.10. 기준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이 접촉이 발생한 자

- ①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 ②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③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④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 결정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행동지침

I 지사장 행동지침

□ 지사내 직원 관리

- 지사장은 방문 민원과 직원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 민원창구별 행동지침을 담당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 민원실 민원안내자 및 선별민원실 상담직원 배치 시 임신부,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원은 제외하고, 발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 민원인 밀집 시, 민원인 분류를 위하여 민원안내자 2명으로 운영
- 민원안내자·선별민원실 상담직원은 교대 근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 지사장은 방역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방역관리자) 및 연락체계를 전담하는 직원(연락담당자)를 지정한다.

□ 직원 중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 ‘확진환자’의 조치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르며 치료기간 동안 근태는 복무지침에 따른다. (현재는 병가)
- ‘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감염병의심자’가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근태는 복무지침에 따른다. (현재는 공가)
※ 직원 근태는 ‘Ⅵ.코로나19 직원 복무관리 기준(18p)’ 참조

□ 사무실 관리(소독 등) **붙임1**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무실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민원실 및 민원상담부서, 책상, 의자, 문고리, 화장실 등 민원인 접촉 가능한 물건·장소는 수시로 소독 등을 실시한다.
 - 선별민원실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민원인이 이용한 장소는 매 상담 종료 시마다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II

전 직원 공통 행동지침

□ 사무실 근무할 때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실내 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 흡연실에서는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방역당국의 권고를 감안하여 기관 소재지역의 거리두기가 2단계 미만인 경우에도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 특히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거나 승강기 등 밀폐된 공간(스마트워크센터 포함)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강기 이용 시 대화 자제
- ※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도 준수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은 주기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손 소독제 사용 가능)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식사 할 때

-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
- 외부식당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I. 상황 별 지침 2. '식사할 때', II. 시설 별 지침 1.5. '음식점'(일반식당, 뷔페, 구내식당), 1.6. '카페' 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식사 할 때’ 주요내용 >

① 준비

- 테이블 간, 테이블 내 좌석간 2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좌석 배치하기
- 식사 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식사약속은 가능한 최소인원 및 시간 최소화 하기
 -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및 포장·배달 활용하기

② 식사 시

-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③ 이건 위험해요!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대화하며 식사·음주
- 음식점·유흥시설 등 들어갈 때만 마스크 착용, 안에서는 마스크 벗고 대화
- 뷔페 등 불특정 다수와 식기나 도구 함께 사용

□ 출퇴근 할 때

○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 상황 별 지침 3. ‘이동할 때’ 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동할 때’ 주요내용 >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 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 택시 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활용하기
-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기 등

- 퇴근 후 가급적 일찍 귀가하되, 기관·주거지·방문지 등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활동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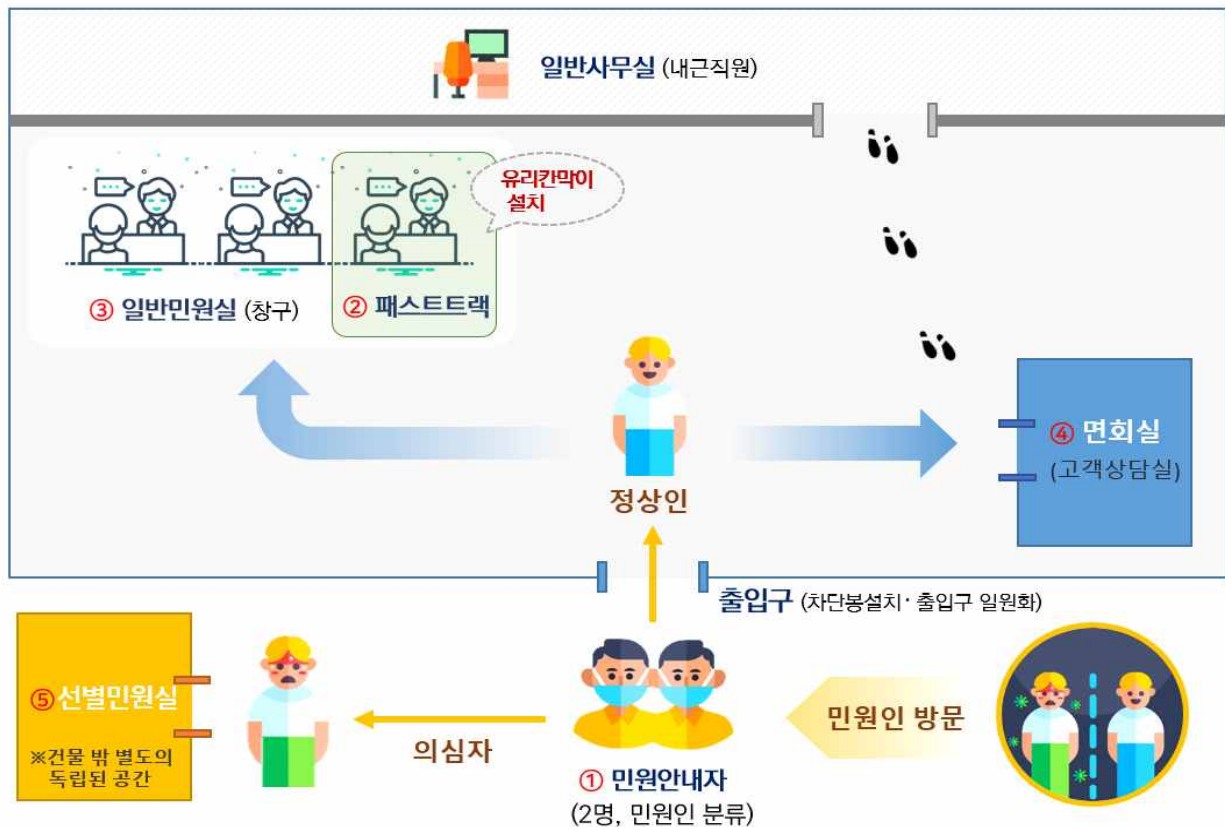
민원실 직원 행동지침

《 민원상담 흐름도 및 사무실 배치도 》

◆ 민원상담 흐름도



◆ 사무실 배치도



《 개 요 》

- 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원인을 통제한다는 안내를 한다.
- ② 민원안내자(관찰자)는 민원인을 분류한다.
- ③ 위험 민원인은 선별민원실에서 상담하고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④ 비위험 민원인은 민원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상담장소로 안내한다.

용어정의 및 임무

【민원안내자(관찰자)】

- 민원상담사 또는 직원, 지사 입구에서 민원인 분류 담당(2명)
 - (민원안내자1) 민원인 코로나19 감염증상 관찰 및 분류
 - (민원안내자2) 민원 목적에 따른 분류(유선상담/패스트트랙창구/일반민원실/면회실 구분 안내)

【위험 민원인】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또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일반민원실】

- 현재 각 지사에서 운영 중인 민원실

【선별민원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 등 감염우려가 있는 민원인을 상담하기 위한 지사 사무실 외부*의 별도 독립된 장소에 설치된 민원실

【면회실】

- 민원실 방문자 외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일반사무실** 외부의 별도 장소에 설치한 공간

【상담 직원】

- 민원인 상담 업무 담당 직원
 - ※ 임신부, 호흡기계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업무 수행이 곤란한 직원은 제외한다.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민원업무에서 제외한다.

* 사무실 외부: 출입구 별도 설치 및 외벽 등으로 구분된 장소

** 일반사무실: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배치도 참조)

□ 민원 출입구 안내문 게시

- ① 코로나19 예방과 빠른 상담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원 목적에 따라 상담창구를 구분’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한다.
- ②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였으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 후 지사를 방문하라는 안내문을 창구 밖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붙임6**
- ③ 민원안내자 운영 및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게시한다. **붙임5**

□ [민원안내자1] 민원인 발열여부 등 확인

외국인민원센터는 민원인 전부 마스크(KF94)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

- ① 민원안내자는 창구 입구에 차단봉 등으로 단일 출입라인을 만든다.
 - 회의 탁자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상담 전에 사용을 권유한다.
- ② 민원안내자는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 민원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민원인이 기침이 있거나 열이 있는지 육안으로 관찰하고 해외 방문 이력 및 확진환자와 접촉 여부 등 문진을 통하여 환자를 분류한다.
 - 감염이 의심되면 양해를 구하고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다.

《 질의 예시 》

- Q1.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를 방문했거나 확진환자와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 Q2. 기침이나 가래,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흉통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으십니까?
- Q3. 기침이나 가래,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흉통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 Q4. 발열로 해열제를 복용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까?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경우
 -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후 안내에 따른다.
 - 양해를 구하고 유선으로 민원처리함을 안내한다. **붙임2**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및 확진환자와 접촉이 없었던 경우
 - 양해를 구하고 유선으로 민원처리함을 안내한다. **붙임2**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경우
 - **(선별민원실 설치 O)** 선별민원실로 안내한다.
 - **(선별민원실 설치 X)** 양해를 구하고 유선으로 민원처리함을 안내한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 및 확진환자와 접촉이 없었던 경우
 - 일반민원실로 안내한다.

□ **[민원안내자2] 민원 목적에 따라 상담창구 분류 ... 지사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① 민원안내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안내하고, 민원인을 유선민원, 단순민원, 일반민원, 불만민원으로 구분하여 안내한다.
 - (유선민원) 유선 상담이 가능한 민원인은 접수증을 작성 후 유선으로 상담
 - (단순민원)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등 단순민원은 **패스트트랙 창구로 안내**
 - ※ 패스트 트랙: 단독 상담창구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창구
 - (일반민원) 보험료 조정 등 일정시간 상담이 필요한 민원은 **일반민원실로 안내**
 - (불만민원) 압류, 제도불만 등 상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인은 **면회실로 안내**
- ② 민원실 내부에 대기 적정인원이 초과되었다고 판단되면,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도록 안내한다.(적정인원은 지사 민원실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 지사 밖에서 대기 시에는 한 줄로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 ※ 대기줄 바닥에 테이프 등으로 1m 간격 표시
 - 방문 예약제 운영 등으로 지사 상황에 맞게 대기 민원인을 분산한다.
- ③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단순민원이 장기간 대기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창구 1개를 **패스트트랙 단독 상담창구**로 운영한다.
 - 일반민원실 창구 1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표시하고, 즉시 처리 가능한 단순 민원을 안내하여, 민원실 내 대기인원을 줄인다.
- ④ 상담대기 중에 민원인이 다중 밀집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기좌석을 배치한다.
 - 1인용 의자는 앞·뒤, 좌·우 간격 1m이상 확보하여 배치하고, 고정형 의자는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한다.
- ⑤ 지사별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간이 민원상담 공간을 확보하고, 이 경우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한다.

2

일반민원실 상담직원 행동지침

- ① 유리 또는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여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사전 차단한다.
※ 칸막이 높이 : 착석한 상태에서 이마 높이 이상(60cm 이상)
- ②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상담한다는 양해를 구한다.
- ③ 마스크(KF80이상)를 쓰고 상담하고, 민원인에게도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담한다.
- ④ 상담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선별민원실로 민원인을 안내한다.
- ⑤ 상담직원은 상담이 끝날 때마다 손 소독제로 소독하고, 한 시간 간격으로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3

선별민원실 상담직원 행동지침

- ① 지사사무실 밖, 별도의 독립공간에 선별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 책상, 의자, 컴퓨터를 배치한다.
※ 필요시 민원접수증을 받고 유선으로 상담 가능
 - 선별민원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록(민원접수증)하도록 안내하고, 유선으로 상담 처리한다. **붙임2**
- ② 유리 또는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여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 (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사전 차단한다.
※ 칸막이 높이 : 착석한 상태에서 이마 높이 이상(60cm 이상)
- ③ 민원인과 직원 모두 마스크(KF94)를 쓰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상담한다.
- ④ 상담 중에도 민원인이 감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재차 확인한다.
- ⑤ 상담직원은 상담이 끝날 때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한 시간 간격으로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⑥ 선별민원실은 1일 최소 두 시간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매 상담 종료 시 마다 에탄올 등으로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소독한다. **붙임1**

관찰 요령

▶ 우선 민원인이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는지 육안으로 관찰하고

1.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이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민원인 양해 후** 비접촉식 이마 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이 37.5℃ 이상인지 확인한다.

→ (1, 2 모두 해당) 보건소(1339 등) 신고 후 안내에 따른다.(마스크(KF94) 착용 안내)

→ (2에 해당) 민원접수증 작성 후 유선 상담한다.

민원실 가림막 · 소독 · 환기 · 냉난방기 사용 등

*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 참조 [2020.11]

◆ 민원실 가림막

[재질 · 형상]

- 투명재질로는 유리,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불투명 재질로는 종이(1인 휴대용)등으로 설치하기
- 가림막 형상은 H자형(2인용), +자형(4인용), 고정식 · 이동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설치 및 관리방법]

- 가림막 높이는 가급적이면 60~80cm이상으로 설치하기
- 가림막 소독시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으로 표면 닦기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주의사항]

- 가림막 효과를 위해 냉난방기 풍향이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 민원실 소독 **붙임1**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직원은 마스크* 및 글로브를 착용하고 매일 상담 종료 시 민원인이 사용한 손잡이, 책상, 걸상, 컴퓨터 등을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 (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을 적신 일회용 타월)을 사용하여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일반민원실(KF80이상), 선별민원실(KF94)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

◆ 민원실 환기

-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가능한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
 -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를 통한 환기 실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민원실 냉난방기 사용

[냉난방기 등 사용 시]

-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시켜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 될 우려가 있어 환기, 풍향 등에 주의하여 사용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도록 사용, 가능한 바람의 세기를 낮추어 사용
 -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 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냉난방기 등 관리]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 및 위생 수칙 준수
 - ※ 공기청정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손 씻기 생활화

- 손 씻은 후에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없을시 손 위생 전용면 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월이 젖으면 바로 교체한다.

IV

면회실(고객상담실) 상담직원 행동지침

《 개 요 》

- 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를 하고 방문 및 상담한다는 양해를 구한다.
- ② 상담 중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후 안내에 따른다.
- ③ 감염증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일반 절차에 따라 상담하되 주의 조치를 실시한다.

용 어 정 의

【면회실(고객상담실)】

- 민원실 방문자 외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일반사무실*** 외부의 별도 장소에 설치한 공간

※ 일반사무실에는 직원 외 출입 불가

【민원안내자(관찰자)】

- 민원상담사 또는 직원을 말하며, 방문민원인의 발열, 기침,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유무를 관찰, 민원을 분류한 후 상담실(일반민원실, 면회실, 선별민원실 등)로 안내한다.

【상담직원】

- 민원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 임신부, 호흡기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업무 수행이 곤란한 직원은 제외한다.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민원업무에서 제외한다.

* 일반사무실: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배치도 참조)

1

면회실(고객상담실) 준비

- ① 방문자를 사무실 안으로 들이지 않고 면회실에서 맞이한다.
 - 일반사무실 외부, 내근직원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활용한다.(칸막이 설치)
- ② 면회실에는 배너를 설치하고, 상담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배치한다.
- ③ 면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민원공간마다 민원안내자를 배치해야 한다.

2

민원 상담

- ①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상담한다는 양해를 구한다.
- ② 마스크(KF80이상)를 쓰고, 민원인에게도 마스크를 착용 시킨 후 일정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담한다.
- ③ 상담 중에도 피방문자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있으면 해외 방문 이력 또는 확진환자 접촉 등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관찰 요령

우선 민원인이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는지 육안으로 관찰하고

1.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이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민원인 양해 후 비접촉식 이마 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이 37.5℃ 이상인지 확인한다.

→ (1, 2 모두 해당)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 신고 후 안내에 따른다.(마스크(KF94) 착용 안내)

→ (1에 해당) 마스크(KF94)를 착용시키고 선별민원실로 안내한다.

→ (2에 해당) 민원접수증 작성 후 유선 상담한다.

- ④ 상담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선별민원실로 민원을 안내한다.
- ⑤ 상담직원은 상담이 끝날 때 마다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한 시간 간격으로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면회실 소독·환기 및 손 씻기 생활화

*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 참조 [2020.11]

◆ 면회실 소독 불임1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직원은 마스크(KF94) 및 글로브를 착용하고 매 상담 종료 시 민원인이 사용한 손잡이, 책상, 걸상, 컴퓨터 등을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을 적신 일회용 타월)을 사용하여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

◆ 면회실 환기

-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가능한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를 통한 환기 실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손 씻기 생활화

- 손 씻은 후에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없을시 손 위생 전용 면 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월이 젖으면 바로 교체한다.

◆ 면회실 설치 예시



《 개 요 》

- 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를 하고 방문 및 상담한다는 양해를 구한다.
- ② 상담 중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후 안내에 따른다.
- ③ 감염증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일반 절차에 따라 상담하되 주의 조치를 실시한다.

용 어 정 의

【출장 직원】

- 인정조사, 이용지원 상담 등의 목적으로 민원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직원
- ※ 임신부, 호흡기계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업무 수행이 곤란한 직원은 제외한다.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장업무에서 제외한다.

1

출장 준비

- ①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복무지침에 따른다.
- ② 출장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고 출장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한다.
 - 경유지와 출장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하여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한다.
- ③ 피방문자와 통화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보류하거나 유선상담을 실시한다.
 - 피방문자 및 피방문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 이력 또는 확진 환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질의 예시 》

Q1.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 기침이나 가래,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흉통 중 한가지라도 증상이 있으십니까?

Q2. 기침이나 가래, 콧물, 인후통, 호흡곤란, 흉통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Q3. 발열로 해열제를 복용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까?

④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리플릿을 준비한다. **붙임4**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I. 상황 별 지침 3. '이동할 때' 준수

⑤ 마스크(KF80이상)는 충분히 휴대하고, 손소독제는 차량에 비치한다.

※ 인정조사의 경우, 비닐장갑, 폐기용 봉투 등을 별도로 준비한다.

⑥ 보건소 전화번호와 선별진료소 리스트를 소지한다.

2 방문 상담

① 상담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② 피방문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 주의 조치를 하고 방문하였다고 양해를 구한 후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③ 피방문자 및 가족의 관찰

- 상담 중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였으며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는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후 안내에 따른다.

④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속히 상담을 종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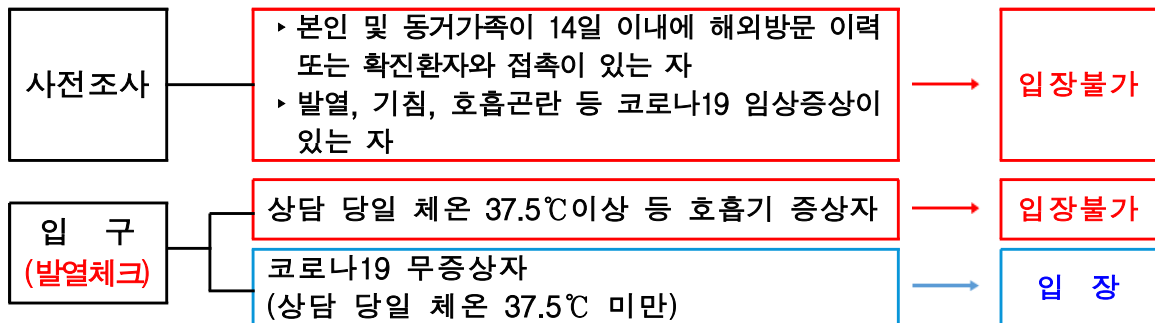
⑤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상담 종료 후에는 보건복지부 예방수칙에 따라 손을 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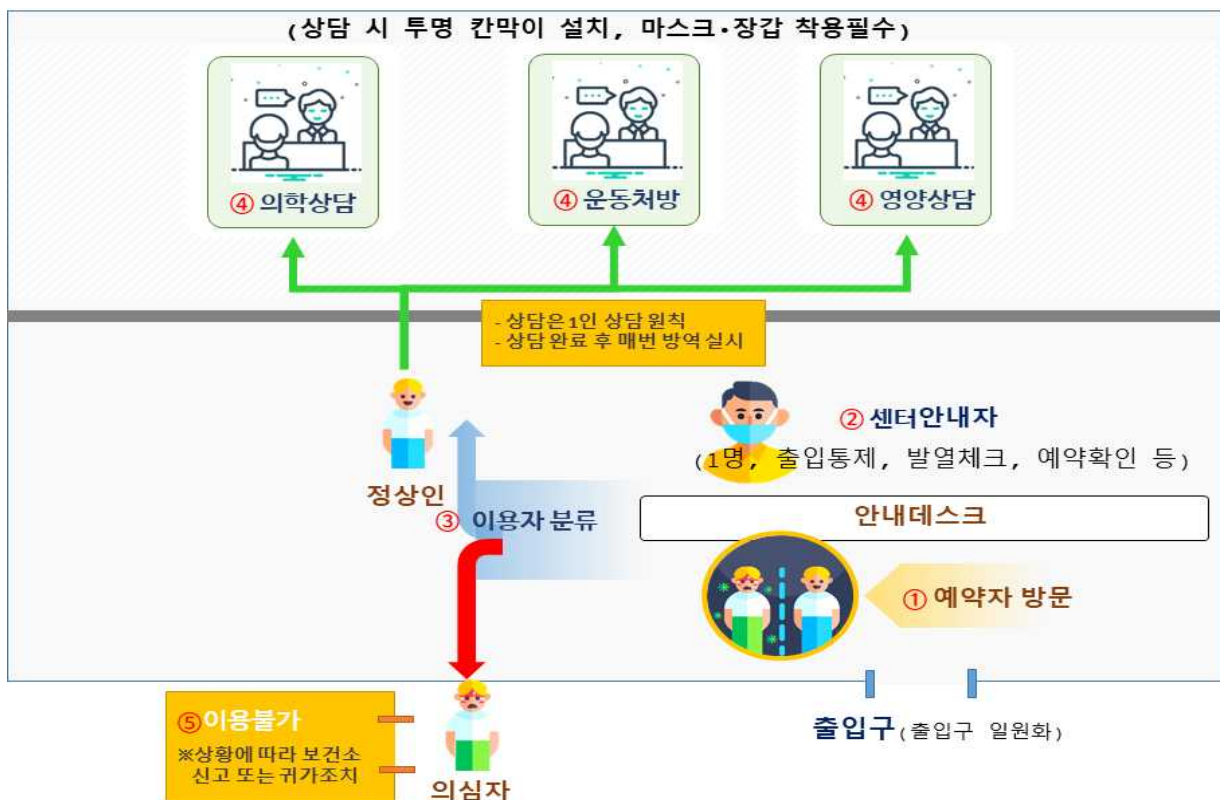
《 센터 입장 흐름도 및 상담절차 》

◆ 센터 입장 흐름도

입장 가능여부 구분



◆ 상담절차



《 개 요 》

- 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용객을 일부 통제한다는 안내를 한다.
- ② 이용객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별로 조치사항을 안내한다.
- ③ 위험 요인이 없는 이용객은 평소대로 상담실 또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도록 하되, 상담실 또는 체력단련실 소독 등 주의 조치를 한다.

1 센터 이용자 안내

- ① 예약자에 한해서만 센터 방문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 ② 예약 후 센터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해야 함을 안내하며, 미 착용시 출입이 불가함을 안내한다.
- ③ 센터 출입 전 발열 측정하여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 출입이 불가함을 안내한다.
- ④ 센터 출입 전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이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출입이 불가함을 안내한다.

2 이용객 분류

- ① 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코로나19로 이용객을 통제한다는 안내 입간판(배너)을 세우고, 포스터 등을 여러 곳에 게시한다. **붙임6**
- ② 방문자가 출입하는 경로는 안내데스크로 단일화한다.
- ③ 안내데스크에 안내문(체온측정 등 협조내용), 손소독제 등을 비치한다.
 - 안내데스크 상담원은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 센터의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④ 센터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 센터 방문자의 명단 작성(필요시 전자출입명부 사용가능), 발열체크,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여 입장을 통제* 한다.

* 방문자가 명단작성, 체온측정 등 거부 시 센터 출입제한

* 37.5℃ 이상 고열 등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도공간에 격리(마스크(KF94) 착용 안내) 후 지사 및 지자체(보건소) 연락, 지시사항 이행

① 안내 직원 조치사항

- 유리 또는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여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사전 차단한다.
※ 칸막이 높이 : 착석한 상태에서 이마 높이 이상(60cm 이상)
-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상담한다는 양해를 구한다.
- 마스크(KF80이상) 및 장갑을 착용하고, 민원인에게도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상담한다.
- 상담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선별민원실로 민원인을 안내한다.
- 상담직원은 상담이 끝날 때마다 손 소독제로 소독하고, 한 시간 간격으로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② 상담실 또는 체력단련실 조치사항

- 방문객이 접촉하고 머무른 센터 내 장소는 이용 직후 모두 철저히 소독한다. **붙임1**
- 재난·재해 대응수칙 및 감염병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사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방법을 조정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센터 운영기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건강증진센터 일차의료지원센터	① 제한적 운영허용 - 상담관리(의학·영양·운동처방) 대면서비스 - 운동지도·건강교육 비대면 서비스		② 온라인센터만 운영허용 (오프라인 센터 운영중단) - 전체 비대면 서비스		③ 운영중단 (온/오프라인 모두)

센터 가림막 · 소독 · 환기 · 냉난방기 사용 등

*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 참조 (2020.11)

◆ 센터 가림막

[재질 · 형상]

- 투명재질로는 유리,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불투명 재질로는 종이(1인 휴대용)등으로 설치하기
- 가림막 형상은 H자형(2인용), +자형(4인용), 고정식 · 이동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설치 및 관리방법]

- 가림막 높이는 가급적이면 60~80cm이상으로 설치하기
- 가림막 소독시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으로 표면 닦기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주의사항]

- 가림막 효과를 위해 냉난방기 풍향이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 센터 소독 **붙임1**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직원은 마스크(KF94) 및 글로브를 착용하고 매일 상담 종료 시 민원인이 사용한 손잡이, 책상, 걸상, 컴퓨터 등을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등을 적신 일회용 타월)을 사용하여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

◆ 센터 환기

-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가능한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를 통한 환기 실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병행이 가능한 경우 병행 실시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환기 시에는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하기

◆ 센터 냉난방기 사용

[냉난방기 등 사용 시]

-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시켜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 될 우려가 있어 환기, 풍향 등에 주의하여 사용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도록 사용, 가능한 바람의 세기를 낮추어 사용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 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냉난방기 등 관리]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 및 위생 수칙 준수

* 공기청정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손 씻기 생활화

- 손 씻은 후에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없을시 손 위생 전용면 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월이 젖으면 바로 교체한다.

VII

행사(회의, 교육, 워크숍 등) 운영직원 행동지침

행사나 회의 등은 충분한 사전 준비 및 방역관리 등 해당 행동지침을 준수

《 개 요 》

- ① 행사 운영 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 ② 참석자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후 안내에 따른다.
- ③ 행사 주관자는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만 입장을 허용하고, 행사장의 소독·환기 등을 실시한다.

* 위험요인

- 참석자 및 참석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 이력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개요' 참고, (1P)

1

방역관리 준비

- ① 행사총괄 책임자(부서장 등)는 방역관리자(책임자, 관리자, 연락담당자)등을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실천한다.

《 방역관리자 구성 예시 》

구 분	역 할
방역관리 책임자	- 운영 총괄 - 비상상황 발생 시 의사결정
방역관리자	- 감염예방 관련 지침 숙지 -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 방역관리, 방역지침 교육·안내, 방역물품 관리
연락담당자	- 상황 모니터링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 지자체(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 ② 방역관리자는 행사진행 지역의 지자체(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③ 방역관리자는 행사 중 코로나19 증상자 격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 ④ 방역관리자는 청소·소독, 환기, 물품·자원관리, 안내문 부착 등을 시행한다.
- 행사장소를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 행사장소가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한다.
 -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행사장소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를 부착한다. **붙임4**
 - ※ 예방수칙 :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행사장소의 소독·위생 관련 물품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 ※ 마스크(KF80이상), 체온계, 손소독제, 비누, 일회용 장갑, 일회용 마이크 덮개 등
- ⑤ 방역관리자는 행사 장소에 대해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붙임9**
-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를 활용하여 조치한다. **붙임10**

2 행사 사전준비

가. 참석자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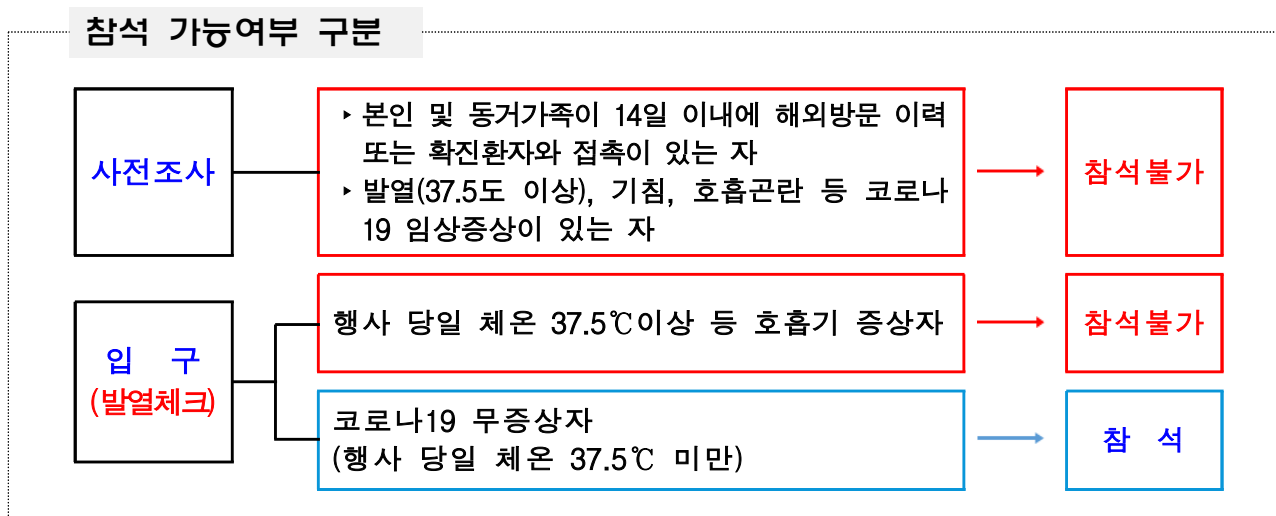
- ① 참석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 참석이 불가능함을 안내한다.
 - 참석자 및 참석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 이력 또는 확진 환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② 행사 참석 시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개별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 ③ 참석자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사전 안내한다.
- ④ 행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⑤ 체온 측정 및 참가자 간 간격유지 등 운영요원의 안내사항에 협조하도록 안내한다.
- ⑥ 참석자에게 행사 기간 중 휴게시간, 일과 후 집단 활동 금지를 안내한다.
- ⑦ 마스크 미착용 등 행사 진행 중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이 퇴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⑧ 행사 중, 호흡기증상·발열(37.5도 이상) 등 확인되면 즉시 진행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한다.

나. 행사장소 사전 준비

- ① 행사 장소는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으로 한다.
- ② 행사 참석자의 좌석이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③ 출입구를 1곳으로 차단하여, 출입자의 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한다.
- ④ 손소독제 비치, 화장실 손 세정 등 참석자가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행사 운영관리

가. 입장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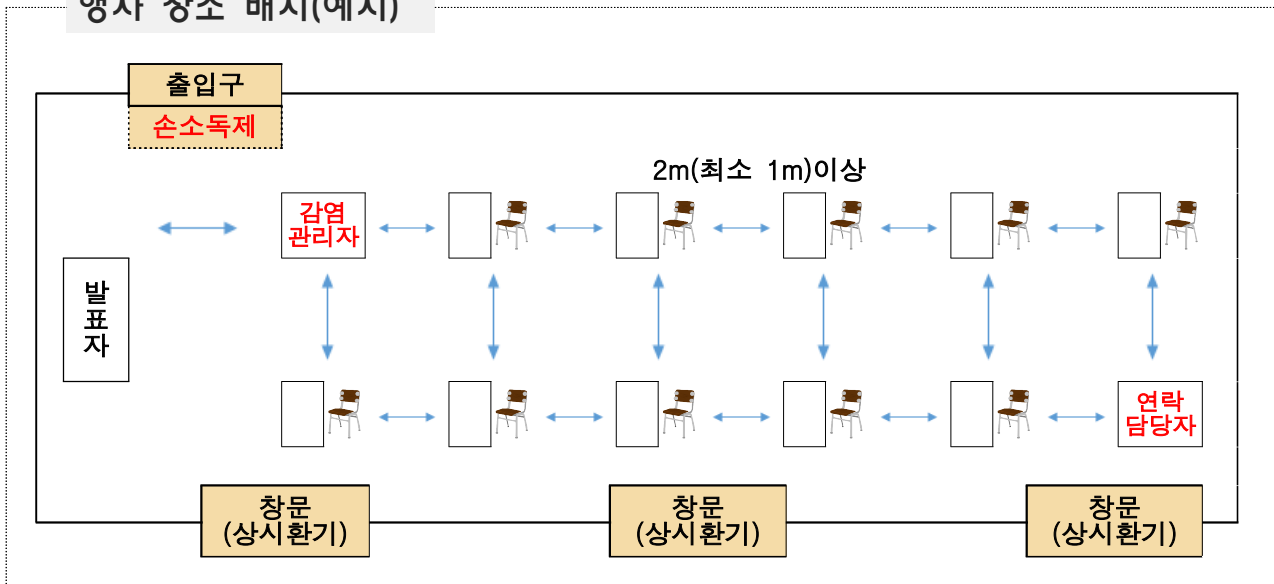
- ① 참석자를 대상으로 전원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② 참석자 간의 2m(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 참석자를 조절하는 등 밀도 조절*을 위한 노력을 한다.
 - * 바닥면적 4㎡당 1명으로 입장인원 허용, 총 정원의 50% 입장인원 제한
 - ③ 행사 장소 입실 전 코로나19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측정거부 또는 열이 나는 참석자 등은 입장을 제한하고, 이상이 없을 때 행사를 진행한다.
 -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행사 당일 체온 37.5℃미만 참석자 → 행사 장소 입실
- ※ 참석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실시(예: 1부 시작 전, 2부 시작 전 등)
 - ※ 강의실 입구에서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발열 체크 후 행사장소 입실

나. 참석자 안전관리

① 참석자 간 2m(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 스티커로 간격표시, 대기줄 분리,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안을 활용

행사 장소 배치(예시)



② 물리적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명 칸막이 설치, 참석자 수 제한, 참석자 간 시간 간격 유지 등을 실시한다.

③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를 설치하여 참석자가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악수·포옹 등 신체 접촉을 자제토록 안내한다.

④ 참석자가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참석자의 입·퇴장, 이동이 분산되도록 유도한다.

⑤ 참석자가 37.5℃ 이상 고열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한다.

- 행사 도중 체온 37.5℃ 이상 등 호흡기 증상자 발생 → 즉시 별도공간에 격리 → 지자체(보건소)연락 후 지시사항 이행

다. 행사장 안전관리

① 행사 장소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좌석은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 창문열기가 어려운 경우 **1시간 간격으로** 환기(또는 환기되도록 요청)한다.

* 에어컨의 풍량은 최소한으로 하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하기

- ③ 행사 장소는 최소 1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여러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 한다.
- 문손잡이, 책상, 탁자, 의자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소독한다.
 - 교육 자료 배부 시 등 접촉이 있는 경우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 강의자, 발표자 변경 시 마다 마이크는 일회용 덮개를 교체한다.
 - 하나의 마이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공용시설 안전관리

- 필요시 공용시설(구내식당, 흡연실, 휴게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 공용시설 집중관리 ||

▶ 구내식당

- 시차 분산 운영
- 배식·퇴식 시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유지(스티커 등으로 간격표시)
- 좌석은 한 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투명칸막이 설치 등)하고, 대화 자제하도록 관리

▶ 흡연실(흡연부스)

- 흡연장소는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표시(스티커 등으로 간격표시)
-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부스는 1인씩 이용하는 등 흡연자간 2m(최소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게시) 및 관리

▶ 휴게실

-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사람 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거리유지 가능하도록 테이블 배치 조정 등), 휴게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손이 자주 닿는 탁자, 의자, 정수기 표면 등은 소독(일 1회), 주기적 환기(일 2회 이상)
- 개인 컵, 개인수저 등 사용안내, 공동물품 이용은 자제하고 사용 시 소독철저

4 행사 종료 후 조치

- ① 행사 종료 후 참석자에게 3~4일 이내에 유증상이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연락 하도록 안내한다.
- ② 방역관리자는 행사 참석자 중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지자체(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 ※ (2020.06.04.) 방대본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준용
- 공단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조치한다.

VIII

코로나19 직원 복무관리 기준

- ※ 인사운영부-2928호(2020.11.1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복무관리 안내”
- ※ 인사운영부-3054호(2020.11.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안내”
- ※ 인사운영부-3207호(2020.11.27.)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에 따른 복무관리 안내”

1

코로나19 확진자 · 의심자 대상 근태관리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 ... 「인사규정」 제52조(병가)
- 격리·치료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무실 출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 날 까지 ‘공가’ 처리 ... 「인사규정」 제53조(공가)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다만, 공가 사용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자인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 **확진자가 공단을 방문하여 직원과 접촉한 경우**

- 직원 본인이 보건기관 등에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 확진검사 및 결과 통보 일까지 '공가' 부여
 - 음성판정인 경우 다음날 업무복귀
- 직원 본인이 검사 후 음성판정이라도 보건기관소 등에서 별도 격리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 해제 통보일까지 '공가' 부여
- 지사 등 근무시설 폐쇄의 경우 소독기간 '공가' 부여
- 자가격리 통보 직원과 접촉한 동료직원의 경우 자가격리 통보 직원이 확진검사 및 결과 통보일까지 '공가' 부여
 - 자가격리 대상 직원이 음성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날 업무복귀
 - 해당직원과 접촉한 직원의 범위는 부서장 판단하여 지정

□ **직원이 감염시설을 방문하거나, 동거인이 감염시설근무 또는 방문한 경우**

- 직원 본인이 보건기관 등에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 확진검사 및 결과 통보 일까지 '공가' 부여
 - 음성판정인 경우 다음날 업무복귀
- 본인이 검사 후 음성판정이라도 보건기관 등에서 별도 격리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 해제 통보일까지 '공가' 부여
- 직원 본인이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시설 폐쇄의 경우 소독기간 '공가' 부여
- 동거인이 감염시설 근무 또는 방문자로 직원 본인에게 자가격리 통보 시 해당직원과 접촉한 직원도 격리해제시까지 '공가' 부여
 - 해당직원과 접촉한 직원의 범위는 부서장 판단하여 지정
- 동거인이 감염시설 근무 또는 방문자로 자가격리 통보 시 직원 본인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시까지 '공가' 부여
 - 확진검사 결과 음성의 경우 검사 시부터 확진(음성)결과 통보 일까지 '공가' 부여
- 확진자 발생시설 방문직원은 보건기관으로 부터 별도의 자가격리 통보가 없는 경우 공가부여 불가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귀국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직원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 중요업무 수행 등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 해외입국자 가족에 대한 무증상자 자가격리기간(14일)의 동거가족(직원)은 공가 미적용

□ 그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부서장은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직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서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가' 처리
 - 확인 결과 37.5℃이상 고열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 공가 사용일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서 또는 진료기록 등(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이 경우 공가는 질병상황에 따라 최장 14일까지 사용
 -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용하여 준수... 치료·검사 등은 보건기관, 요양기관 등과 유선상담 후 진행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개학연기 등의 사항

-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초·중·고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포함)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 대해 자녀돌봄휴가* 또는 연가 사용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 자녀돌봄특별휴가(유급)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및 온라인 개학 사용 가능

-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녀돌봄휴가(1자녀 2일, 2자녀이상 3일) 또는 가족돌봄휴가(무급), 연차휴가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무급)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 ('20.12.31.까지 유효)

-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가족관계증명서), 인사기록상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첨부 제외

※ 가족돌봄휴가(무급) 보상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대상

-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 적용)

- ③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및 중식시간 탄력적 운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운영

- 운영기간 : '20.3.4.~별도 통보시까지
- 운영목적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운영방법
 - 인사보수시스템 근태화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 1주 또는 1개월 단위
 - 이용직원은 출퇴근 확인 필요 ... 인사보수시스템 가운데 상단 확인버튼 클릭
- 근무유형별 근태 안내

근무유형	출근시간	퇴근시간	오전반차	오후반차	조기퇴근(2회)
시차출퇴근 A형	08:00	17:00	08:00~12:00	13:00~17:00	16:00~17:00
시차출퇴근 B형	10:00	19:00	10:00~15:00	15:00~19:00	16:00~19:00
정상근무자	09:00	18:00	09:00~14:00	14:00~18:00	16:00~18:00

※ 부서별 50% 내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여 사용

※ 기존 유연근무제 및 육아단축근무 사용직원은 제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식시간 탄력적 운영

- 운영기간 : '20.3.4. ~ 별도 통보시까지
-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상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시간, 인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여 운영
 - ※ 1시간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 (본부) 중식시간 및 구내식당 운영 내역(예시) ... 총무부 지침에 따름

중식시간		구내식당 변경운영			
현행	변경	이용시간	기간별 이용대상		
			12.7 ~ 11	12.14 ~ 18	12.21 ~ 24
12:00~13:00	11:30~12:30	11:30~12:00	2그룹	3그룹	1그룹
	12:00~13:00	12:00~13:00	3그룹	1그룹	2그룹
	12:30~13:30	12:30~13:30	1그룹	2그룹	3그룹

※ 1그룹(9,11,18,21,22,24,26층), 2그룹(10,12,17,19,20,23,25층), 3그룹(3,5,6,7,8,13,16층)

- (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적극적 운영

- 국내·외 출장은 본 지침 적용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 최소화 운영
 - ※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 불가피한 출장, 행사 또는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 ※ (예시) 지사장-주무부장, 부장 - 해당팀장 등

- 기관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등 제외가능
- 재택근무 복무관리
 - 재택근무는 근무지가 자택이므로 통상근무 시간 중 “이동제한”
 - 외출, 조퇴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시행(근태 담당자는 전산 입력)
 -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하여 긴급업무처리 협조
 - 각 부서는 하루 2회 재택근무직원의 출퇴근 상황 점검 내부결재 관리
 - 재택근무자별 업무부여 및 결과 관리는 기획조정실 「재택근무 효율화를 위한 종합 계획 지침(12.11. 시행)」에 따라 실시
 - * 혁신기획부-6938(2020.12.14.) “재택근무 종합계획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 안내”

IX

방역관리자 및 연락담당자 행동지침

《 개 요 》

- ①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 등 관련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② 상황발생 시 연락을 위한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용어정의 및 임무

【방역관리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직원
- 지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온측정 등 감염병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공가 처리, 진단검사 결과 및 증상 여부를 지속 파악하는 직원
 - ※ 임신부, 호흡기계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업무 수행이 곤란한 직원은 제외한다.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장업무에서 제외한다.

【연락담당자】

- 코로나19 상황발생 시 본부,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전담하는 직원

1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① 지사장은 방역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방역관리자)을 지정한다.
- ② 방역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방역 관리를 평가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하고 방역 지침을 지속 준수해 나가도록 추진한다. **붙임9**
 - * 평가횟수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부서장이 결정한다.
 -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를 활용하여 조치한다. **붙임10**
- ③ 방역관리자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 하도록 하고 출입 시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 ④ 방역관리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다.

- ⑤ 방역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아래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직원은 '공가'처리 하고, 자택에서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도록 한다.
 - 해당 직원은 자택으로 이동할 때 되도록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보건용 마스크(KF94)를 착용한다.
 - 방역관리자는 해당직원을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한다.
 - 해당 직원이 37.5℃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 본부(☎1339, ☎지역번호+120)로 연락하도록 한다.
- ⑥ 방역관리 전담직원은 직원 중에 의심환자나 관찰대상이 있는 경우, 연락담당 직원에게 매일 상황을 알려준다.
- ⑦ 방역관리 전담직원은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 ⑧ 방역관리 전담직원은 부서장 판단하에 필요시 출입자명부 또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하여 방문자에게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붙임13**

2 | 연락담당자 주요 역할

- ① 지사장은 코로나19 상황발생 시 연락체계를 전담할 직원(연락담당자)을 정한다.
- ② 연락담당 직원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시군구청 내 시설 소관부서,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 ③ 연락담당자는 지사에 확진환자, 의사환자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 하여 본부 '코로나19비상대책단' 정명훈 팀장(☎ 0099-4822)과 통화 후 전송한다. **붙임3**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1부	40
2. 민원접수증 서식 1부	41
3. 코로나19 상황 발생 보고 서식 1부	42
4.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 1부	43
5. 민원안내자운영 및 마스크 착용 안내문 시안 1부	44
6. 민원실 구분운영 및 보건소 상담 안내문(배너) 시안 1부	45
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1부	46
8.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1부	47
9.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1부	48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1부	50
1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1부	52
12.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수칙 1부	54
13.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 1부	56

□ 청소·소독 전

1. (소독계획) 시설관리자는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2. (소독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는다.
3. (개인보호구)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4. (소독제 준비)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
5. (환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청소·소독

1. (일상청소) 자주 만지지 않는 표면과 물건은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2. (표면청소)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3. (표면소독) 소독제로 천(형걸 등)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 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4.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다.
*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림
5. (재사용도구 소독) 소독 종료 후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6.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는다.
7. (개인보호구 탈의)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청소·소독 후

1. (샤워 및 환복)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2. (환기)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3. (주의사항)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민원접수증

[코로나19에 따른 민원 처리 방법 안내]

코로나19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고객님의 민원을 유선으로 처리해 드릴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식에 따라 민원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성 명	홍 길 동
접수일시	2020. 12 .2. 14:55
연락처	010 - 〇 〇 〇 〇 - 〇 〇 〇 〇 (통화가능시간) 평일 오후 14:00~17:00
민원내용	(지역가입자), 재산매각에 따른 보험료 조정
민원담당자 및 전화번호	031-〇 〇 〇 - 〇 〇 〇 〇

코로나19 상황 발생 보고

(○○지사, '20.0.00.(수), ☎ 033-736-1234)

대상직원	
성명	
소속	00지사 00부
거주지	
동거인	

상황발생	
인지 경로·일자	본인신고, 보건소 통보(2020.11.00.)
해당직원 근태	휴가[], 공가[], 병가[], 근무중[]
해당직원 근황	

진료상황	
분류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감염병의심자[]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 가장 근접일로 작성
최초 병원방문일	
검사일·검사기관	검사일자, 000보건소
검사결과	양성[], 음성[], 검사진행중[], 검사미실시[]
확진일	

전파경로	
감염 경로 추정	동거가족[], 비동거가족[], 동거인[], 지인[], 해외여행[], 대중시설[]
전파 추정일자	2020. 11. 00.
전파자 상황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감염병의심자[]
전파자 확진일	2020. 11. 00.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마이오피스>알림마당>안전경영>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번호409228, 코로나19 예방 마스크착용 안내문)

1 민원안내자 운영 안내문

코로나19 예방 협조 안내



■ 민원안내자 운영 (민원상담구분)



코로나19 예방 및 빠른 상담을 위하여 **민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분	대응 안내
① 보험료 설명 등(서류제출X)	▶ 민원접수증 작성 후 유선처리
②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등	▶ 단독 상담창구 안내
③ 보험료 경감 등(서류제출O)	▶ 일반상담창구 안내
④ 건강보험제도 설명	▶ 면회실 또는 일반상담창구 안내

※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들은 민원안내자에게 말씀해주세요.

2 마스크착용 안내문

코로나19 예방 협조 안내



■ 방문객 및 근무자 마스크 착용



공단은 **청결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들은 민원안내자에게 말씀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방지
안 내**

**고객 안전을 위하여
발열 · 기침 ·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신 경우,
부득이하게
대면상담이 불가하오며
유선으로 상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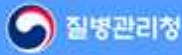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방지
안 내**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발열 · 기침 ·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신 경우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지역 보건소 상담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0.11.14.

마스크 착용!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여기서 반드시 착용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구분	1단계(생활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1단계 시설,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붙임 8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방역관리자 :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건물 외부 공기로 자연환기가 가능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창문·출입문 통해 일 2회 이상 환기 가능		창문·출입문 통해 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구내식당 등)	이용자간 항상 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업무방식) 아프면 쉬거나 대체근무가 가능한가? (휴가, 병가, 재택근무 등)	대체로 가능		일부에 한해 가능		대체로 불가능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기관, 콜센터 등)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 정도는? (아래 항목에 V표시)	6개 모두 준수 (해당사업장 7개)		4개이상 준수 (해당사업장 5개)		4개미만 준수 (해당사업장 5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매일 직원의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직원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직원(일용직 포함) 및 방문자 연락망 확보하고 있는가?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 동 자가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밀폐도) 건물 외부 공기로 자연환기가 가능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필수)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
(밀집도) 직원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 간 거리 확보)	※(필수) 직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책상, 작업대, 의자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불가능한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배치, 작업대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물리적 장벽(책상 칸막이 등) 활용 등 ③ 흡연실, 탈의실, 휴게 공간, 구내식당의 대기 줄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서는 2m 간격을 표시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회의·보고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업무방식) 아프면 쉬거나 대체근무가 가능한가?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는 방안 마련)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한 공간 내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	※(필수) 직원 분산 등을 위해 근무 형태 안내 및 유도 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휴가제도 마련 및 활성화 ②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1, 2분의1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가능한 비율) 근무(그 외 재택근무 등 활용) ③ 교대근무 시, 교대 조는 시간차를 두고 업무 공간 사용 ④ 사업장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필수)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업무 공간 내 음식물 섭취 제한 ②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③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⑤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 정도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활동 (관리의 효율성 증대)	※(필수)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등)	※(필수) 매일 직원·방문자 의 체온측정,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튼 차단)	※(필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코로나19는 침방울 튼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필수)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필수)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 ①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 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직원(일용직 포함) 및 방문자 연락망 확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필수) 일시적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의 연락망 확보 ①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방문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
(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 (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	※(필수)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 ①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

【중요 수칙 메시지】

- (제 1 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 (제 2 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제 3 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제 4 수칙)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제 1 수칙)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 ①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 ②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 ③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고,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에서 모임은 자제합니다.
- ④ 특히,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제 2 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 ①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 ②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검사를 받습니다.
- ④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제 3 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 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③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⑤ 만나는 사람과 신체접촉(악수 혹은 포옹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 4 수칙)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오전·오후 각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 ②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자연환기를 병행합니다.
- ③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④ 소독을 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 소독 전·중·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둡니다.

제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 ①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 ②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 ③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 ④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권역별 대응)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대응)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2/3

2020.11.2. 제작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3

2020.11.2. 제작



2020.11.19

코로나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0 인플루엔자 예방

- ①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
- ②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③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 ④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최소 1m)** 거리두기
- 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⑥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⑦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소독**하기
- ⑧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⑨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하기
 * 다양한 주요 증상 :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구토·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등
- ⑩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일반수칙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꼭 필요한 경우(병원 방문 등)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

가정 내 주의사항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기
* 특히 고위험군(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과 접촉 피하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
-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
-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
-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 등교, 출근하기
-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2

시설관리자 이용 절차

가. 준비사항

- (필수)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혹은 태블릿PC 혹은 기타 장비), 휴대폰 충전기(혹은 태블릿PC 충전기), 대표자(혹은 방역관리자) 본인 명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 * 대규모 인원이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스캐너가 내장된 PDA 형태(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음
- (선택) 거치대*(휴대폰 혹은 태블릿 PC 용)
 - * 시설 입장 손님이 직접 QR 코드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QR 코드 인식용 휴대폰(혹은 태블릿 PC)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아래 그림 참조)



- (미지원 장비) Windows 기반 POS 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치형 2D 레이저 스캐너(QR 코드 인식 가능)'는 사용불가



나. 필수 환경

- (네트워크 연결 필수) 본 전자출입명부 앱은 QR코드 인식 기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서버와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 (핫스팟 기능 활용 가능) 시설 외부에서 입장관리를 수행하는 관계로 WiFi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방역관리자 혹은 직원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을 동작하여 QR 코드 인식용 단말기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 시설관리자용 앱설치 절차

- 스마트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store), iPhone, iPad 등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App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 앱을 찾아 기기(안드로이드 4.1 이상 혹은 iOS 11 이상)에 설치하여야 함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사용자)
또는 애플 앱스토어(iOS 사용자)에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② 사업자 신규 등록 버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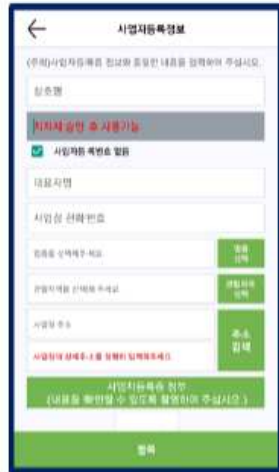


③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읽고 동의 (각 동의에서 '전체보기'를 할
경우, 전체 내용이 화면에 표시)



④-1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경우)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관할지역,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



④-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체크하며,
 다른 정보들은 모두 입력하여 가입
 (단, 지자체 승인 후 사용 가능)



★ ① 위의 의무적용 시설이
 아닐 경우만 "기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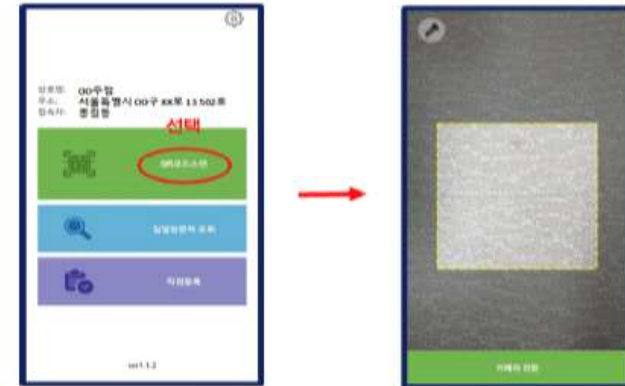
★ 사업자등록증 상
 유사한 업종, 업태로 선택

④-3 가입정보 중 업종은 필수 선택
 (의무적용시설이 아닌 경우, "기타"를 선택하여 세부업종 선택)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중복 가입 가능

④-4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번 가입할 경우)
 확인 창에서 "예(관리자 추가등록)"를 선택
 ⑤ 관리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
 ⑥ 관리자의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



⑦ "QR코드 스캔"버튼 선택 시, 사용 가능

라. 직원 등록

- 각 시설의 대표자 등록(앱설치, 본인인증 및 회원등록 완료)이 완료되었을 경우, 직원(또는 출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을 추가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 출입구가 여러 개일 경우, 해당 출입구 마다 단말기 설치(거치) 및 방문자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함



- ① 메인페이지(로그인 후 첫 번째 화면)에서 직원등록 선택
- ② 직원등록 페이지가 열리며, 상단 오른쪽의 “더하기(+)” 아이콘 선택
- ③ 직원의 실명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직원 스스로 입력하게 하기보다는 대표자가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 추천)
* 추가 단말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소 별칭(00입구)으로 사용 가능
- ④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절차 완료

마.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지만 사업장 장소가 분리된 경우(출입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 등)에는, 각각 사업자(관리자)를 별도 등록하여 관리
-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번 가입 가능



- ①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는 같게 입력
- ② 상세주소를 다르게 입력하여 새로 가입

바. 시설관리자용 앱을 활용한 입장 절차

- 스캔에 사용되는 휴대폰(혹은 태블릿)은 통화가 어려울 수 있고, 쉽게 방전될 수 있으므로,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에 전원을 상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휴대폰(혹은 태블릿)의 전면 카메라 혹은 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면카메라 사용시 QR 코드는 약 30cm의 간격을 두어 스캔하여야 원활한 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카메라로 촬영해 보세요
•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방문 절차>

1.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로그인 후 QR코드를 발급하세요

1. 네이버: ① '로그인' 선택 → ② 'QR체크인' 선택

2. 카카오톡: ① '로그인' 선택 → ② 'QR체크인' 선택

3. PASS: ① '로그인' 선택 → ② 'QR체크인' 선택

2.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이용객: 스캔, 시설관리자: QR코드 발급

※ 전자출입명부(KI-Pass)의 개인 정보는匿藏처리하여 활용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문의전화 1339